

#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992. 12. 1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8조 제 1항과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1. 감사의 목적

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2. 감사 기간

'92년 12월 1일~12월 3일(3일간)

## 3. 감사실시 기관

- 가. 서산시청
- 나. 서산시 보건소
- 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

## 4. 감사실시 경과

- 가.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대 상 기 관	감 사 위 원 장	감 사 위 원	보 조 직 원
서 산 시 청 시 보 건 소 문 화 회 관 관 리 사 무 소	윤 찬 구	간 사 정 진 국 위 원 최 은 우 위 원 박 영 용 위 원 조 례 창	전문위원 권태관 의사계장 백종신 행정 7급 정동남 기능 9등급 이정식 기능 10등급 국현석 " 정수경 " 차명화

나. 감사 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감 사 방 법	비 고
'92. 12. 1 ~12. 2	서 산 시 청	시 청 회 의 실	질 의 답 변	
'92. 12. 3	시 보 건 소	보 건 소 회 의 실	"	
	서 산 시 청	시 청 회 의 실	"	

## 5. 주요감사내용

실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기획감사실	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교부세 산정 현황 2. '89~'92까지 보조금의 수령금액 3. 지방교부세법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89~'92년도까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는 특별교부세 용도별 현황 4. 금년도에 시행하는 각종 사업부분의 예산배정 현황 5. 예산의 연간 배정 계획서 6. '92연도 감사원, 도·시 자체 감사결과 공무원 비위 사실여부와 조치 현황 7. '92년도 도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조치사항 8. '89~'92년도 사업비 집행내역 9. '89~'92년까지 일반행정비, 산업경제비, 사회복지비, 문화체육비, 지역개발비, 지원 및 기타 경비의 비교 명세서 10. 개원 이래 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건의 및 결의안에 대한 처리 회신이 없는 이유 11. '92년도에 이월된 사업의 추진현황 12. '92년도 예산액중 목을 변경하여 집행한 내역 13. 기채액중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내역	
기획감사실 도 시 과	14. 매화APT 분양의 저조로 인한 92년도 제 1회 추경예산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	
기획감사실	15. 조례 및 규칙 명칭과 현황 16. '89~'92까지 소송현황에 대한 서류 17. 도서관 건립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8. '91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결과	
기획감사실 세 무 과	20. '89~'92 경상적 세외수입액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얼마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총수입액에 차지하는 비율	

실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문화공보실	21. 문화의 거리조성 추진상황과 준공예정일 22. 유선방송이 현재 방영되는 구역의 한계와 시 전지역에 확대 실시할 계획여부 그리고 현재 1개 업체가 독점영업을 하므로서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례 23. 시 행정의 홍보 현황	
총 무 과           총 무 과 보 건 소  총 무 과 회 계 과	24. '89~'92년 사이에 도청을 비롯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본시 방문현황과 방문 목적 25. 주민 불편 해소사업 집행시기와 집행 현황 26. 14대 국회의원 선거와 이번 대선으로 인하여 사퇴한 통·반장의 인적 사항 27. 시장이 감사장 및 표창장을 수여한 현황 28. 여론 추진 정보비 집행내역 30. 공무원 재해 보상 급여의 집행내역 31. 시장의 각급 단체와의 집행내역 32. 행정사무의 개선으로 이면지 사용등 사무경비 절감 현황 33. 보건소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 34. 구내식당 임대계약 관련 서류와 활성화 추진경과  33. 보건소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  34. 구내식당 임대계약 관련 서류와 활성화 추진경과	
새 마을 과 가정복지과	35. 시민대학과 주부대학 운영 실적	
새 마을 과	36. 으뜸가꾸기 사업의 추진과 준공예정일 37. 레포츠공원 조성을 위하여 소요된 경상적 경비 지출내역 과 이주민의 민원과 이주대책 그리고 준공일 38. 부춘산 체육시설 관리현황과 보수비 집행내역 39.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추진경과와 사업중지 이유 및 향후 계획	

실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새 마을 과	40. 으뜸가꾸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내역 41. 양유정 공원조성 사업계획 수정 계획 42. 시산시의 균형발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서산 시남부 외곽지역인 오산동을 중심으로한 양대동과 수석동 을 연결하는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시행 계획 43. '92년도에 현수막 설치를 위한 민원 신청서 접수 현황과 이중 허가된 사항 그리고 불허가한 사항 44. 수석 1통의 송림공원 조성에 따른 대상지 선정에서 부터 책정되기까지 경위 45. '91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도지사 으뜸가꾸기 사업은 명시 이월까지 했으면서도 현재까지 사업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 46. 지방양여금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지 방양여금 산정 내역	
세 무 과	47. '89~'92까지 세입중 의존세입 현황 48.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결손 처분현황 49.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징수현황과 미수현황 그리고 그 대책 50. '9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목표액중 회계별 징수 내역과 미수납액의 현황 그리고 미수납액의 원인과 대책 또한 결함이 예상되는 세입액 51.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 실적 52. '89~'92까지 세원발굴 실적 53. 행정 착오로 인한 2중 부과 건수와 금액	
세 무 · 건 설 도시·세무과	54. '92세입중 부담금 2,054,168천원에 대한 현황 55. 지방세의 동별 징수현황과 동별 사업비 집행내역 56.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인 잔디포, 쥐똥나무에 대한 투자 내 역과 판매기간이 지났음에도 판매를 못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 57. 이자 수입에 대한 자금별(세목별) 예금 현황 58. 종합토지세 부과건수와 징수조서 그리고 미수현황과 대책	

실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세 무 과          세무·회계과 세무·건설 회 계 과 회 계 과 회 계 과	59. 토지등급 편급도 작성에 따른 용역비 집행내역 60. 오물수거료 징수현황과 부과 근거 61. 지방세 징수현황과 부과 근거 62. 지방세 징수현황과 과오납 현황, 그리고 미수액 현황과 징수대책 63. '92년도 1월~10월까지 시의 예탁금 계정 종류와 이자발생 금액 64. '89~'92까지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현황 65. 여유자금의 관리상태와 자금운영 실태 66. 10월말 현재 세외수입현황과 금년도 면허세 부과 건수와 징수실적 및 미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 67. 월별, 분기별 자금소요 판단계획 68. 하천·국공유재산 임대료부과 징수 현황 69. 하천 사용료 징수 현황 70.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건물 관리 현황	
회 계 과	71. '92년도까지 본청 및 동에서 발주한 각종사업의 공사명과 (입찰계약과 수의계약별로)집행 현황 72. 저가 입찰제 실시로 92년도 예산절감 현황 73. 92년도 각종개발 사업중 저가 입찰된 건수와 예정가격의 몇%에서 응찰되었는지 그리고 저가 입찰된 사업의 후속 조치와 공사진행중인 사업중 하청 업체의 현황 74. 대형승합차 구입이후 이용실태와 효과 75. '91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76. 공유재산중 임야, 잡종재산의 일반인 임대계약현황 77. 시유재산 사용허가 현황과 기관 및 단체가 사용하도록 해 준 조건 및 현황에 관한 자료 78.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추진현황	

실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회 계 과	79. 92년도 차량관리비의 집행현황과 이중 세차비로 지출된 내역 80. 차량구입현황과 차종별 이용실태, 그리고 운영경비, 보험 계약 현황 81. 서부시장(저자)관리 현황 82. 예천동 준공업지역 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시 민 과	83. 자동차등록소 개소이래 92년 10월까지 차종별 차량등록 상황	
지 적 과	84. 농로되찾기 사업현황과 실적, 그리고 100% 포장 5개년 계획 관계	
지 적 · 산업 세 무	85. 양대동 정화사 염전허가 사항과 관리 실태 및 면허세 부과 현황	
사 회 과	86. 육녀봉 무훈탑 건립 경과 관계 87. 영세민 월동 대책 88. '89~'92년도에 행여자 발생건수와 조치 현황 89. 저소득 주민줄이기 운동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자활 능력 배양의 추진내용과 투자와 관련	
사회·새마을과	90. 목욕탕, 수영장 및 욕조물 수질 검사 사항사항 91. 시 상조 은행 운영 상황	
사회·건설과	92. '89~'92년도 영세민에게 생활비 지급과 관련 93. 영세민 및 장애등에 대한 취업훈련실태와 추진실적 94.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포장마차에 대한 이전 대책 95. 법인성 유해업소의 지도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 내역 96. 좋은 식단체 추진 경과와 사업의 성과	
가정복지과	97. 무인탁 노인에 대한 월동 대책 98. 노인활동에 필요한 노령수당 지급현황 99. '92년도 예산서상에 편성된 5개 지구의 공동묘지에 대한 경계 측량 결과와 관리계획 100. 공원묘지 조성과 관련된 '92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의 집행상황 (공원묘지 조성대상 후보지 선정에 따른 국내여비공원묘지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와 공동묘지 경계측량 인부임, 공원묘지조성추진 정보비,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비)	

실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환경보호과	101. 서산시 공원묘지 조성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102. 쓰레기매립장을 위하여 기채한 20억원을 집행상황 103. 환경미화원 배치와 수거 현황 104.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변소의 수거료와 이에 필요한 유지비 상황 105. 청소 수거용 리어카 및 논놀박스 구입 현황과 환경미화원 채용 상황 106. APT, 다세대 주택의 정화조 수거처리와 행정조치 상황 107.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행정 조치 상황 108. 환경부담금제 실시에 따른 서산시의 부과예상에 대한 조치(대응)대책 109. 정화조 등록과 미등록으로 인한 행정처분내용 110. 오수정화조 시설의 설치 대상건물과 시설물의 점검 현황 그리고 미설치에 대한 행정 조치 상황 111.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들과의 약속한 사항과 실천결과 그리고 시행 계획 112. 서산시의 공해업체수와 천미사의 근본적 공해해소 대책 123. PP, PE마대의 구입과 소모	
산 업 과	114. 서산시 주차장 설치현황과 설치 계획 115. 내고장 특산품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 실태 116. 가스 저장소 안전관리, 감독내용과 사용 기구 판매업소의 검사요원 확보 상태 117. 농어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의 성과 118. '92년도 1차농기계 보내기 운동에 대한 모금현황과 배정 내역, 그리고 중앙농기계 협동조합에서 공급한 관리기에 대하여 수혜농가에 169,000원을 부담시킨 사유 119. '92년도 서산시 읍내동에 설치한 농어민 후계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한 경위	

실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산 업 과	120. 농어민후계자를 위한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해 놓고도 현재까지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한 사유 121. 개인택시 면허 발급 122.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경위와 향후 전망 123. 주·정차 위반으로 스티커 발부 내역 124. 도정료의 현황과 동정공장의 행정지도 실적 및 계획 125. 노외 주차장 현황 126. 10% 절약운동에 대한 금년도 평가 127. 농촌 소득사업과 농외소득사업의 단기 및 중기 재정계획	
건 설 과	128. '89~'92재해 대책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집행 현황 129. 하수도 시설공사와 하수관리 정비사업 130. '92년 호우로 인한 침수지역 현황과 피해액 및 장기 대책 131. 하천은 무단점유하고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세대수와 면적, 그리고 하천관리 상태	
도 시 과	132. '91~'92년도에 신축된 아파트와 공사진행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미분양 실태 및 원인과 대책 133. 제 1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지청산금 정산내역과 용역비 집행상황 134.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투자 상황 135. 석남동 영진아파트 건축허가 경과와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 136. 동아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행정지도 실적 137. 서해빌라에 대한 재해 발생후 조치 상황 138. 구획정리 특별회계중 제1지구와 동문지구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 상황 139. 공원조성계획 지구로 지정된 현황과 규모 그리고 미시행된 공원 조성토지에 대한 대책 140. 매화 및 동아아파트의 분양비교 상황 141. 준공업 지역내 아파트 건축허가 사항 142. 매화아파트에 대한 당초계획과 현재 현황	

실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도 시 과	143.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응과 앞으로 투자 구상 144. 저소득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145. 구획정리 지구내의 채비지 매각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 146. '92년도 토지거래 허가 사항 147. 가로수의 수종과 고사목의 보식 대책 148. 서산시 건축위원회의 구성현황과 운영실적, 그리고 협의된 사항 149. 서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국민주택)운영조례 제7조(자금운영) 제2항에 의한 문제점과 10월 30일까지 진행 상황 150. 서산시 도시기본계획확정과 재정비계획 확정시기 151. 양유정의 수백년된 느티나무가 고사된 이유와 관리상의 문제점과 대책	
수 도 과	152. 공기업 특별회계 여유자금 관리실태 153.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감사결과에 대한 상황 154. 갈수기 원수 구입비 집행 내역 155.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용역비 집행내역 156.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상황 157. '89~'92까지 공기업 특별회계 기체현황 및 상환계획 그리고 이자 지급 상황 158. 11월까지 수도물 총생산량과 누수로 인한 재정 손실 159. 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 현황	
민 방 위 과	160 방법 비상벨 설치와 이용 상황	
보 건 소	161. 모자 보건사업에 투자한 내역 162. 진료실적과 진료 수입현황 163. 방역에 대한 용역계약 상태 164. 병원적출물 처리현황과 수거업체에 대한 감독현황과 행정지도 상황	
문 화 회 관 관 리 사 무 소	165. 문화회관 운영사항과 사용료 징수내역 그리고 비용(보상금)지출 상황	

실 과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해 당 실 과	<p>166. 92년도 사업중 명시·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p> <p>167.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운영(풀포함)내역과 '92년도 안으로 집행이 예상되는 경상적 보조금 지원내역과 각 단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p> <p>168. '89~'92년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풀포함)집행상황과 집행후 감사한 근거</p> <p>169. 민간에 대하여 지급한 보조금현황과 활동실적 그리고 사업성과의 분석 평가서에 의한 감사</p> <p>170. '89~'92 정액보조단체지원 실적과 지도실적</p> <p>171. 상 사업비 집행 상황</p> <p>172. 91년도 이월된 사업의 추진 상황</p> <p>173. '89~'92년까지 일용인부 채용현황과 인건비 지급 상황</p> <p>174. 시설물 공작물 관리 실태</p> <p>175. 각종 위원회의 회의 운영실적, 그리고 비용지출 현황</p> <p>176. '92예산중 사업비가 변경되었거나 미집행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한 상황과 이유 그리고 이에 따른 부대시설비, 특별관공비 지출 상황</p> <p>177. '92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상황</p> <p>178. '92공사중 설계 변경한 사업과 그로 인한 추가로 부담한 비용과 변경한 사유</p> <p>179. '93년도 토지보상 사업비에 관한 조세감면 규제법의 대응 대책</p> <p>180.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서산시 재무 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획</p> <p>181. 국도비 송금 지연으로 회계장부 기재작성 혼란 및 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가져오는데 이의 대책</p> <p>182. 국도비 송금지연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경제적 손실 상황</p> <p>183. '92년도 예산집행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분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p> <p>184. 92년도 용역비 집행 상황</p>	

## 6. 시정요구 사항

1. 예산집행이 주민 의사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본예산에서 삭감한 문화제 행사보조금(1,700만원)을 POOL예산에서 집행한 것은 주민의사를 전혀 무시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2. '92년 사업중에서 사고,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산업이 14건에 6,858,091천원으로 나타나는것은 국도비내시 지연 또는 공기부족 등의 이월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확실적이고 안일한 집행자세와 관행에서 비롯된 행정으로 이의 시정이 요구됨.
3.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POOL포함)을 집행하고 또 집행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감사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되어있지 않으므로 금후에는 확실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4.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는 각종결의, 건의서와 서면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의 회신이 무단 지연되거나 통보조차 없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으로 앞으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서 시정처리되어야 할 것임.
5. 주민불편 해소사업비와 포괄사업비를 하반기에 집중하여 집행한 것은 효율적인 자금 운용상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앞으로 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가능한한 상·하반기에 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성격상 각동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게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시정을 요함.
6.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을 사전에 조사나 협의도없이 무계획한 상태에서 헛된 경상사업비만 지출하고 사업을 축소변경까지 하면서도 착공조차 못한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하고 책임감없는 행정처리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부당하므로 시정이 요구됨.
7. 대형버스를 구입한후 그 이용실태를 보면 직원의 선진지 견학시에는 타 군의 관광버스를 임대이용하면서 특정기관이나 단체 및 행정동우회같은 친목단체등에 사용하도록 대여한것은 부당하며, 이후로는 대형버스의 이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탄력성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8.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의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취객들의 고성방가로 인하여 주변 시민에게 피해가 심각함은 이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은 인정하나 이주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임.
9. 현재 무훈탑이 건립된 장소가 부적정하며 관련법규를 위배하여 시공함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사용기간이 지나는 '93년까지만 사용하고 기간이 지나면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당초 국가무훈탑을 단군전 상단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 아주 부당함.

10. 공해 배출업소인 천미사의 관리가 도로부터 서산시로 이관 되었슴에도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바 이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무관심한 소치라고 사료되므로 시정이 요구됨.
11. '92 쓰레기 매립장 편입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를 본예산에 계상못하고 예비비를 사용하는등 대체적으로 예비비의 사용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시정을 요구함.
12. 서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분노의 처리규정은(제3장) 현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이 요망됨.
13. 가정복지과의 공동묘지 경계측량은 '9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경계표시를 하지 못한 것은 즉시 시행을 촉구함.
14. 경로당 지원을 위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은 세웠으면서도 무의탁노인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없는 것은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대책이 있어야 할것임.
15. 농어촌 장·단기발전계획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인바, 내실있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 농촌이 활기를 찾을수 있도록 수정을 요망함.
16. 방법비상벨 설치가 관리장부상 이중 등재로 부정확할뿐만 아니라 홍보의 미흡으로 효과를 거수하지 못한 예산만 낭비한 행정이었다고 사료되므로 시정이 요구됨.
17. 공원묘지 조성자금의 2건에 대하여 당초 기재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것은 재정운영에 바람직하지 못한것으로 부당함.
18. 예산편성시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체 수입의 66%를 차지하는 것은 불안정한 재정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므로 대책마련이 요구됨
19. 주택특별회계 상환금의 입금지연으로 연체이자가 무려 80,000천여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자금의 운영미숙에서 발생된것으로써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업무숙지 미숙과 무사안일에서 비롯된것으로 시정이 요구됨.
20. 매화아파트 및 택지분양이 순조롭게 분양될것을 예상하여 '92년 본예산에 새입재원으로 2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세입에 차질을 가져온 것은 현지 실정을 감안하지 못한 무리한 예산편성있슴.  
이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것임.
21. 석남동 영진아파트 민원발생현황을 시에서는 파악조차 않고 있는가하면 공무원의 민원처리 자세가 안일하여 업자를 동조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안에 조사하여 적법조치 하기 바람.

22. 병·의원의 적치물 처리지도, 단속을 년 2회 실시하는 것은 미흡하다 할 수 있으며 장부상 확인에 그치고 있는바 그 회수를 늘려 현장확인을 불시에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체계있는 계획수립이 요망됨.  
→ 예) 쓰레기장에서 병원 적치물을 발견할 수 있었음.
23. '91년도에 사업이 책정되어 명시이월까지된 으뜸가꾸기 사업(윤곤강시비, 심정순 기념비)이 일년이 다 가도록 착수조차 못하고 현재까지 설계중(수석 1통 마을휴식공원 설치)이거나 문안검토 중이고 모형구상 추진중(옥녀 전설비)이라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이동과 안일하고 나태한 업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사고이월사업으로 해를 넘기는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로써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두번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함.
24. 시는 승격된지 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일부 업무가 이원화되어 일괄성없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것임.  
→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개정, 주택특별회계의 용자금 회수관리, 세입의 확보계획등
25. '92년 6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에게 직간접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은 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

## 7. 건 의 사 항

1. 모든 예산의 편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고 짜임새있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타당성있는 계획수립이 선행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전략으로 집행함이 순서인데 관습적인 답습행정으로 예산이 편성된 후에 사업계획을 세워 집행하려는 자세는 이제 탈피해야 할것임.
2. 시장의 의지에 대한 보조기관의 역할이 미흡한바 각 실과장은 시장이 추진하려는 의지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명감있는 직무수행이 절실히 요구됨.
3. 감사자료 요구에 준비 기일이 촉박한면도 있으나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지나칠 정도로 무성의하게 작성되었음.

→ 시설물, 공작물에 대한 관리현황등

4. 총괄적으로 답변이 요구되는 사안은 담당실과를 지정하여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92년 사업중 명시,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민간에 대한 정상적 보조금 집행등

5. 각종 시책에 현장감이 결여되어 공무원의 치밀하고 책임있는 행정수행이 절실히 요구됨.

→ ① 시행전에 세심한 조사연구계획이 필요했던 시책(농산물 직판장 설치, 레포츠허 조성사업)

② 착수 시기가 잘못된 시책(으뜸가꾸기사업, 한발대비 농업용수 관정 개발)

③ 사업을 재검토해 보아야 할 시책(방범비상벨 설치)

④ 사업추진에 확신을 갖고 분발이 요구되는 시책(농공단지조성)

⑤ 소관지정이 명확치 않은 업무(서부시장)

6. 업무에 대하여 서로 떠미는 자세는 시정되어야 할것임.

비록 자기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는 답변을 하고, 소관실과에 위임을 하는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서로 떠미는 자세는 공무원으로써의 공동체연대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개선이 요구됨.

7. 하절기에 방역을 실시함에 있어 태양방역과 수의계약을 독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득 소홀등이 예상되는바 이의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8.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생활에 여유가 있으므로써 발생하는 각종 대형폐기물(폐 냉장고, 캐비넷, 책상, 장농등)등이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에 그대로 매립되는가 하면 시내 외곽지역에 마구 버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를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소와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8. 수 범 사 례

1.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한 묘지구역 확보를 위한 기존묘지의 경계측량 성과는 새로운 묘지 구역의 확보만이 해결책으로 알고 안일하게 행정을 추진하던 관습을 개

선시키려는 시도로 보아 바람직한 행정이었습.

2. '93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예산액의 23.7%인 8,882,000천원으로 충청남도에서 제일 많은 교부세가 내시된것은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보아 노고를 치하함.
3. 전통적 관습에 의하여 불필요한 음식 차림으로 연간 30~40%의 물자낭비를 가져오며, 이로 인한 쓰레기발생율이 30%이상 증가되고 있으므로 6만 시민이 협심, 단결하여 좋은 식단체가 정착이 되면 연간 30억~40억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 늦은감은 있으나 의회와 시에서 좋은 식단체 실시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도문안을 작성하여 지도 한것은 좋은 수범사례라 할 수 있다.